

영국보험계약법 상 고지의무 문제와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에 관한 연구

윤 승 국*

-
- I. 서 론
 - II. 영국보험계약법 상 고지의무 문제점
 - III. 2012년 소비자보험법에 관한 소개
 - IV. 소비자보험법 적용상의 문제
 - V. 시사점 및 결론

주제어 : 고지의무, 비례감액, 영국소비자보험법, 법률위원회,
보험계약법

I. 서 론

영국의 보험계약은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1906))을 기본으로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 영역에까지 적용되어 왔다.¹⁾ 그러나 1970년대

*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 교육항해사

1) MacGillivrayon, *Insurance Law*, 12th ed. Sweet & Maxwell, 2012, para. 17-007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MIA(1906)의 규정이 소비자보험 영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79년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대한 개혁을 위한²⁾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80년³⁾과 2006년⁴⁾의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서 법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였으나,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31.2%에 이르던 런던 보험시장의 보험료 수입이 2006년에 들어와서는 23.7%로 감소함에⁵⁾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독일,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자국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워런티의 엄격성 완화를 시도하여 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됨에 따라 런던보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에 영국법률위원회를 주관으로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The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 Representations) Act 2012 ; 이하 “소비자보험법”이라 칭함)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국 보험법의 변화는 영국법률을 준거약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국내 해상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보험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 2) 워런티의 엄격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담보법 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3권, 2009, pp. 239~273 참조.
- 3) 1980년 영국법률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워런티의 문제점을 실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청약서상의 진술을 워런티로 전환시키는 계약기초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워런티는 청약서가 아니라 별도의 서면에 포함시켜 제공해야 하도록 하였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첫째, 해당 워런티가 중요사항과 무관하며, 둘째, 해당 워런티가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고, 셋째, 해당 워런티 위반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워런티가 위반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면책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기정, “영국법상 보험계약조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통권 150, 2009. p. 365.
- 4) 워런티를 과거 또는 현재 사실과 미래에 관한 워런티로 구분하고, 보험을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하여 법적 취급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bid.* p. 366. 참조
- 5) Baris Soyer, “Beginning of a new era for insurance warranties?”, *Lloyd’s Maritime & Commercial Law Quarterly*, LMCLQ 2013. p. 385.

첫째, 소비자보험 영역으로부터의 워런티의 엄격성 완화를 위한 시도는 기업보험에 해당하는 해상보험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유는 아직까지는 해상보험에서 보험 영업행위 준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보험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⁶⁾ 둘째, 소비자보험법의 제정 배경이 MIA(1906) 상의 고지의무 제도와 워런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폭적인 수정과 추가를 통해 영국 보험법 상 최초로 보험계약자를 소비자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보험에 해당하는 해상보험 영역은 법률위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문화된 법률조직 및 개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해상보험 시장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해상보험계약의 경우 영국법률을 준거약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계약과 관련된 영국법률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의 강구를 통해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보험법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법률 제정 이전에 영국보험계약법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였으나,⁷⁾ 법률 제정 이후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⁸⁾ 이에 본 연구는 영국 법률

6) IHC(2003)에 대한 상세내용은 윤승국·이재복,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관한 비교 분석-”,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4권, 2012, pp. 213~233 참조; 이러한 근거로는 2003년 11월 1일에 공표된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 2003; IHC(2003)에서 MIA(1906)이 갖고 있었던 워런티 위반 시 치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을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 면책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 장덕조,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방향과 최대선의”, 보험학회지 제82집, 2009, pp. 133-154에서 영국 보험계약법의 개정 동향과 관련하여 최대선의를 중심으로 국내 상법에 도입하여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유로는 민법 제2조의 의의와 해석, 그 적용을 둘러싼 견해로 인해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보험계약관계에서의 최대선의와 어떤 차이점을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고, 최대선의의 도입이 우리 법체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중요한 규정인지 하는 점에 집중되어지는 것으로서 사법체계의 일관성에 있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의 연구로는 신건훈, “영국보험계약법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 pp. 257~281 등이 있다.

8) 이정원,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통권 133호, 2012a, pp. 91~114에서 소비자보험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부실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의 내심의 상태를 고

위원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2009 보고서⁹⁾와 2012 보고서¹⁰⁾를 활용하여 보험 계약법 상의 고지의무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소비자보험 법¹¹⁾ 상의 고지의무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해상보험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선행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영국보험계약법 상 고지의무 문제점

영국의 경우 MIA(1906)을 보험법의 기본으로 하여 소비자보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험계약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¹²⁾ 모

의적인 경우와 과실에 기한 경우로 분류하여 고의에 의한 부실고지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하였을 가정적 상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소위 비율적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의 경우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에 보험자가 취하였을 가정적 상황에 대한 종국적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 과연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에 보험자가 취하였을 보험계약 조건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적 보상원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실고지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난점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입법론으로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中村信男, “イギリス2012年消費者保険(告知·表示)法の概要”, 比較法學, 47권 2호, 2013. pp. 103~139에서 소비자보험법이 21세기 영국 보험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향후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계약 체결 후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제 방안과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 방안, 피험자 이익 등의 내용들이 검토과제라고 하여 향후 영국 보험법 체계의 재검토 작업의 동향과 향방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9)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2009,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docs/lc319_Consumer_Insurance_Law.pdf pp. 1~200.

10)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204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155, 2012, CP204_ICL_Business-disclosure.pdf. pp. 1~253 참조.

11) www.legislation.gov.uk/ukpga/2012/6/pdfs/ukpga_20120006_en.pdf. pp. 1~16 참조.

12) MacGillivrayon(2012), *op. cit.*, para.17-007.

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발적인 고지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¹³⁾ MIA(1906)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불고지(non-disclosure)와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¹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MIA(1906) 제17조, 제18조 1항에서는 영국법상 보험계약자는 일체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자의 질문이 없어도 알고 있거나 또는 보험자가 위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당해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지불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 둘째, MIA(1906) 제20조 1항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행한 어떤 중요한 표시는 진실해야 할 것을 규정하여 표시가 진실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표시를 한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진실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셋째, 제18조 1항과 제20조 1항에서는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일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대선의 의무와 진실표시 의무가 소비자에게 과중할 정도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영국에서는 소비자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든 고지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삽입된 경우에는 당해 표시가 위험측정에 중요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워런티 의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조항들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용과 관련된 규칙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소비자 보험법에서는 소비자가 당해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항의 범위 등에서 소비자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13) 中村信男(2013), *op.cit.*, p. 104.

14)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204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155, 2012, para. 2.1.

15)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2. 9.

기존의 법리를 개선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험자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실고지, 부실표시에 의한 계약의 전부를 취소하도록 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험자가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문 또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과실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비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¹⁶⁾ 이는 영국이 18세기 중반에 *Cater v. Bohem*(1766) 사건¹⁷⁾을 근거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¹⁸⁾ 이 사건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우연한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산출 할 때의 근거는 피보험자가 고지하게 되는 특별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피보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당사자의 신뢰 하에 보험계약을 체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⁹⁾ 이를 달리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숨긴 채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또한, 피보험자가 사기 의도를 갖지 않고 착오에 의해서라도 고지 내용을 은폐하여 이루어진 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것은 합의 당시에 의도된 위험과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MIA(1906) 상 고지의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16) MacGillivrayon(2012), *op.cit.*, para. 17-005.

17) *Carter v Boehm*(1766) 1W.B1. 593.

18) MacGillivrayon(2012), *Ibid.*, para. 17-004.

19) 윤승국, “영국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선박보험약관 활용방안-ITCH(1983)과 IHC(2003)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3권 제4호, 2012, pp. 1~30 참조; 신건훈, “영국해상법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6, pp. 155~203 참조.

1. 보험계약자의 자발적인 고지의무

MIA(1906) 제17조와 제18조 1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일체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자의 질문이 없어도 그 사람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인식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지불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⁰⁾ 한편, 제20조 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자에게 행한 중요한 표시는 진실해야 할 것을 규정하여 이러한 표시가 진실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진실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18조 1항과 제20조 1항에서는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일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대선의의무와 진실표시의무가 소비자에게 과중할 정도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가 모든 고지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워런티가 삽입된 경우에는 당해 표시가 위험측정에 중요성을 불문하고 피보험자는 워런티 의무 이행을 요구받게 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조항들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용과 관련된 규칙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2. 자발적 고지의무 위반 효과의 가혹성

MIA(1906)은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고지의무와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의무 이행을 해태 또는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어 해석되었다. 자발적 고지의무 위반(non-disclosure)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20)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2.9.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같은 자발적인 고지의무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의무를 보험계약자 등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무엇이 보험자의 위험 선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²¹⁾ 무엇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고지의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²²⁾ 따라서 자발적인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법률 효과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가혹함을 보이고 있다.²³⁾

② 보험계약자 등에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의 구제 내용도 기존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취소 또는 보험금지급의무 면제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받아왔다.²⁴⁾ ③ 영국 보험법에 있어서 고지·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또는 허위 진술로 된 중요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부면책²⁵⁾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진실표시의무와 소비자의 비자발적 위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MIA(1906) 제20조 1항에서는 자발적인 고지의무 외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 등이 보험자에게 행한 어떤 중요한 표시는 진실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을 때에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시의무 위반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1)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2007), para. 2.11.

22) Pan Atlantic Insurance Co Ltd v Pine Top Insurance Co [1995] 1AC 501 (HL).

23) John Birds, *Birds Modern Insurance Law*, 8th ed., Sweet & Maxwell, 2010, para.7.10.

24)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2007), para. 2.14.

25) 中村信男(2013), *op.cit.*, pp. 107~108 참조.

한, 보험자의 질문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진실하게 표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전체의 취소 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 전부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혹함을 보여주고²⁶⁾ 있다고 하겠다.

4. 계약의 기초조항과 소비자의 비자발적 위험

관습법을 성문화한 MIA(1906)의 제20조에서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등에게 가혹한 결과를 수반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부실표시가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허위 진술에 의해 당해 보험계약이 체결을 하게 된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⁷⁾ 그러나 관습법상 보험자는 청약서 상에 ‘보험계약의 답변 기초조항’의 구성 취지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을 고지한 것으로 하여 ‘진실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IA(1906) 제33조 3항에 의하면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험의 측정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 문구를 청약서에 첨부하여 보험계약자의 모든 답변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주장 또는 어떤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²⁸⁾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 진술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실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26)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s. 2.15, 2.20.

27) 中村信男(2013), *op.cit.*, pp. 108~109 참조.

28)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s. 2.23-2.24.

Ⅲ. 2012년 소비자보험법에 관한 소개

1. 제정 배경

영국보험법은 18세기-19세기에 형성된 관습법을 기초로 하면서 그 일부가 MIA(1906)으로 성문화되어 있지만, 이 법이 모든 형태의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²⁹⁾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소비자인 보험계약에서도 관습법이나 MIA(1906)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국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에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는 1977년 영국보험자협회(The British Insurance Association)와 로이드 협회는 MIA(1906) 상의 고지의무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장기보험실무지침(Statement of Long-term Insurance Practic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 속에는 보험계약에 대해 1977년 약관규제법의 핵심소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⁰⁾

영국보험자협회 등에 의한 위와 같은 자율적 규제와 별개로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 감독청과 금융 ombudsman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MIA(1906)의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³¹⁾ 특히, 금융 ombudsman은 MIA(1906)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소비자보험에 대해 적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적극적으로 고지의무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자의 분쟁에 있어서도 MIA(1906)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적용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과 금융 ombudsman 등 분쟁해결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³²⁾ 이에 영국 정부는 소비자보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29) MacGillivrayon(2012), *op.cit.*, para. 17-007.

30) 이정원(2012a), 전제논문, p. 92.

31) *Ibid.* pp. 92~93.

1) 구성과 주요내용

소비자보험 법은 12개의 조항과 제1부칙, 제2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제1조에서는 ‘소비자보험계약’을 정의하고, 제2조 2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소비자’로 하여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자에 대한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정하여 (최대선의의의무 내용을 수정)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실고지·부실표시에 대해 계약의 전부를 취소해오던 기존의 보험 법리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당해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인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과 악의에 준하는 경우, 부주의(과실)로 인한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와 보험금청구 전부 거절, 보험료 반환의무의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부실표시 등이 없으면 보험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및 보험금 청구 전부거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 지급보험금의 감액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동법 제4조, 5조, 제1부칙 2조 내지 8조) 비례감액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소비자보험계약에서 진실성보증의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하였고, 동 조 1항과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비자발적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보험계약(제1조)은 동법에서 자영업 또는 자기거래(trade), 영업(business), 전문 직업(profession)³⁴⁾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주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과 보험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사람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명시하고 있다.

32) 이정원(2012a), 전제논문, p. 93.

33) 소비자보험법은 제1조(기본용어의 정의), 제2조(계약체결이전과 계약변경이전에 정보제공), 제3조(합리적 주의), 제4조(보험자 구제가 인정되는 부실표시: 정의와 구제), 제5조(보험자 구제가 인정되는 부실표시: 유형), 제6조(워런티와 표시), 제7조(그룹보험), 제8조(타인의 생명 보험), 제9조(대리인), 제10조(계약에 대한 제정법적용이 배제), 제11조(본 법안이 영향을 받는 규정), 제12조(본 법안이 시행, 적용,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소비자보험법의 제4조 3항과 관련하여 제1부칙(계약)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조(대리인)과 관련한 제2부칙 총 4개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5. 14.

한편, 소비자보험법 상의 소비자는 위의 목적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소비자 개념의 구성요건은 자연인 또는 보험계약 체결이 유일하게 당해 자연인의 거래, 영업 또는 전문직업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수행되거나, 그 용도를 주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건의 충족여부는 케이스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실문제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 중 투자로 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이 자가용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소비자라 취급된다. 이와 반면에 건물 등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취급되게 된다.

그리고 동 법에서는 그룹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업 등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비자라면 그 사람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관습법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하고 있다.³⁵⁾ 즉, 보험계약자가 기업인인 경우에는 기업보험의 불고지, 부실고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계약자, 보험수익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보험법의 제정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³⁶⁾이유는 신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부정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여파가 나타나게 되고, 피보험자인 소속 직원들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기업보험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다.³⁷⁾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소비자보험법에서 소비자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소비자보험계약을 체결 및 변경, 부실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MIA(1906) 제

35)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5.18.

36) *Ibid.* para. 7.17.

37) *Ibid.* para. 7.18, 7.19.

1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고지의무가 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소비자보험법 제2조 4항)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도록 하는 고지의무의 성질은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고지의무를 보험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당시의 자기의 답변이 정확하면서도 거짓이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조로 하는 의무로 이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⁸⁾ 이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선의·무과실이어도 결과적으로 불고지, 부실표시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를 면치 못하도록 한 관습법 규칙과 MIA(1906)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계약 체결 시에 고지의무가 보험자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 의무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자보험법은 보험자에게 특정적인 질문을 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지와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된다. 예를 들어, 주택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가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결과, 보험계약자 등이 건물 내에서 화기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그것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강가 근처에 사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수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사고로 기대할 수 없다.³⁹⁾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⁴⁰⁾

또한, 제3조에서는 객관적 사실로 부실표시를 행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험

38)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5.37.

39) *Ibid.* para. 5.18.

40) 中村信男(2013), *op.cit.*, p. 119 참조.

계약자, 피보험자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선의무과실의 부실표시)에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보험자 구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부실표시가 선의 무과실에 의한 것으로 알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3조 1항에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는 것으로 합리적 소비자의 기준은 제3조 3항에서 비례감액주의를 기반으로 접근하도록⁴¹⁾ 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 4항에서는 부실표시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주의의무위반을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자의 질문이 명확하고 특정적인 경우에는 소비자는 당해 질문사항이 보험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제5조 5항)하고,⁴²⁾ 그것에 대한 답변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부주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3) 기타 법적 조치

지금까지 전술한 것 이외에도 소비자보험법은 제6조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계약변경, 계약자의 표시를 ‘계약의 기초’라고 하는 취지의 ‘계약의 기초’ 조항을 당해 계약에 포함시키고도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비자발적인 의무의 조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10조에서는 부실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험법의 규정은 계약에서 배제하고, 소비자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불리한 상태로 하는 것을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제9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소비자보험계약이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체결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해 보험자 구제가 인정되는 부실표시가 인정되면 해당대리점 등이 주관적 사정을 가지고 소비자의 악의 등으로 인정되는가의 여

41)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5.17, 5.72.

42)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5.87.

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관 등의 소비자의 대리인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계약법과 소비자보험법과의 관계

1) 고지의무와 관련한 영국 보험법의 입장

앞서 실시한 것과 같이 MIA(1906) 제18조 1항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중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모든 사항이라 함은 제18조 2항에서는 신중한 보험자(a prudent insurer)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0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의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s)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³⁾ 이 규정을 달리 해석해보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위험인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가 있거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 대해 행한 사실(matter of fact), 전망(expectation), 믿음(belief)에 대한 표시(representation)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할 뿐 별도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요건을 ⁴⁴⁾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The Pine Top(1994)* 사건⁴⁵⁾을 살펴보게 되면, 영국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유인기준(the actual inducement test)’⁴⁶⁾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고지의무 위반 성립요건으로 중요한

43) 이정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53권 3호, 통권 73호, 2012b, p. 238.

44) *Ibid.* pp. 238~239.

45) *Pan Atlantic Insurance Ltd. v. Pine Top Ltd.* [1994] 2 Lloyd’s Rep. 427.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이외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실제로 유인될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고지의무와 관련한 소비자보험법의 입장

(1) 보험자 구제가 인정되는 부실표시⁴⁷⁾

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소비자가 행하는 부실표시를 이유로 보험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① 동 법 제2조 2항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부실표시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한하여 소비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의 동의를 실시하였을 것을 입증(동 법 제4조 1항)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구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 구제가 인정되는 부실표시(동법 제4조 2항)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 법 제5조 2항에서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에서 ‘악의’라 함은 소비자가 진실 되지 않게 표시하였거나, 수량 또는 보험자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제외시킨 경우, 또는, 소비자가 부실표시와 관련한 사항이 보험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의미한다.⁴⁸⁾ 중과실이라 함은 소비자가 표시가 부실인지 또는 보험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것인지 여부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소비자가 당해 허위진술과 관련한 사항이 보험자의 중요성 여부 판단에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기 설명의 정확성 또는 설명 사항이 보험자에게 중요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보험법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법 제5조 3항에서는 과실에 의한 부

46) 이정원(2012b), 전제논문, p. 239.

47) 소비자보험법 제4조 및 中村信男(2013), *op.cit.*, pp. 120~121 참조.

48) 中村信男(2013), *op.cit.*, p. 120.

실표시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전술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자 구제의 유형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어떤 구제책이 인정되는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습법 및 MIA(1906)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선의 무과실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취소와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료 반환의무 면제가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험법에서는 보험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진술의 경우와 부실표시의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진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의 모든 청구를 거절, 소비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한정하여 보험료 반환을 면제(동법 부칙 제1의 제2조)하게 된다. 더불어, 저축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보험계약 상품에서도 저축기능을 제외한 보험료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악의 또한 중과실로 인한 허위진술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후 보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⁴⁹⁾ 이에 반해, 과실에 의한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구제는 소비자보험 계약 체결 시에 소정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면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보험자가 소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조건(보험료 조항을 제외)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해상보험계약이 다른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6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당해 소비자에 대해 소정의 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부칙 9조 4항 a호)

49)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 6.49.

셋째, 보험자가 소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청구에 따라 지불될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하도록 하였다.(부칙 제7조) 이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효력은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료 이외의 계약사항에 대한 조건은 동일하게 되며,⁵⁰⁾ 단지 약정보험료를 더 높은 보험료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약정보험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 대해 비례감액원칙⁵¹⁾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8조)⁵²⁾

IV. 소비자보험법 적용상의 문제

1. 보험자의 질문에 소극적 답변의무의 문제

소비자보험법 제2조 2항에서 소비자는 보험자의 질문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MIA(106) 상의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즉, MIA(1906) 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소비자보험법에서는 보험자의 질문에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하여 소극적 답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험법은 MIA(1906)의 제17조를 배제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5항), 제18조와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을 폐지하고 있다고 하겠다.(동법 제11조 1항) 이러한 변화는 보험자의 질문사항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받게 되는 문제와 함께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50) 中村信男(2013), *op.cit.*, p. 123 참조.

51) 비례감액원칙 주의를 채택하여 지급보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약정보험금액(당초 지급계획보험금액) x X%로 합계한 금액이고, 여기서 X는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를 더 높은 보험료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동법 부칙 제1의 8조).

52)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2.53.

자의 답변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합리적 주의의무의 판단의 문제

1)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의무의 판단

소비자보험법 상의 보험계약자가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보험자의 보험인수 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비자보험법의 제2조 3항을 살펴보게 되면, 보험자에게 주어진 질문표 상의 특정항목에 대한 확인, 수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부실고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MIA(1906) 상의 부실고지를 신축적으로 해석한 *English v. Dedham Vale Properties Ltd. [1978]* 과 *HIH Casualty & General Ins. Co. V. Chase Manhattan Bank [2001]*⁵³⁾과 *Economides v. Commercial Union Assurance Plc [1998]*⁵⁴⁾ 판례에 위배된다. 따라서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험법의 제3조 1항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상황, 시점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서는 문제된 보험의유형과 대상 시장, 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상품설명 자료 또는 출판물, 질문사항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의 명확성의 정도,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계약자에게 대리인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53) *English v. Dedham Vale Properties Ltd. [1978]* 1 WLR 93; *HIH Casualty & General Ins.Co. V. Chase Manhattan Bank [2001]* 2Lloyd's App. 483, 494.; 부실고지를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보험자의 질문에 불완전 또는 답변을 생략하는 경우 부실고지로 인정하였다.

54) *Economides v. Commercial Union Assurance Plc [1998]* Q.B. 587.; 부실고지가 실수로 발생한 경우, 이를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예견, 믿음 등의 의견에 대해 부실고지로 판단하였다.

2) 합리적 소비자의 판단

소비자보험법은 합리적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의 판단하는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실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적인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⁵⁵⁾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MIA(1906) 상의 고지의무에서의 ‘신중한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보험법의 제3조 3항에서는 ‘합리적 소비자 내지 보험계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 4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특정한 성격이나 주변 사항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여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⁵⁶⁾ 부가 규정을 두어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3조 5항에서는 부실고지가 부정직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보험계약실무와 금융 옴부즈만의 판단기준을 실정법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⁵⁷⁾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진술이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보험자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V.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소비자보험법은 오늘날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법의 운용상황을 감안

55) 이정원(2012a), 전제논문, p. 104.

56) *Ibid.*

57) *Ibid.*

하였을 때 단순히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참신한 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공통 규칙으로 보통법과 MIA(1906)의 내용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과 추가를 통해 소비자보험 영역에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규율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본 법안이 실무업계에 정착될 경우 현재의 보험시장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을 국내 관련업계에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기업보험에서의 고지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즉,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는 계약해제에 대해 생명보험계약을 대상으로 5년의 불가쟁 기간 및 보험계약 일반문제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경우의 해제권제한(인과관계부존재특칙)을 도입하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었지만,⁵⁸⁾ 금번 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연구결과의 정리

법률위원회가 불가쟁 기간을 도입 한 것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주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반대를 하여 이를 반영하고⁵⁹⁾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허위진술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 전체 보험계약의 취소를 보험자에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소비자보험 영역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기업보험에 해당되는 해상보험으로 확대될 경우, MIA(1906)에 내포된 제33조 내지 41조

58) 中村信男(2013), *op.cit.*, p. 125.

59)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Cm 7758 (SG/2009/255), para.1.18.

에서의 워런티의 엄격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소비자보험법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1980년과 2006년 보고서에 이어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을 공포하면서 워런티의 엄격성 완화에 있어 영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해상보험 분야에 까지 소비자보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향후 워런티의 엄격성과 관련한 MIA(1906)의 제33조 내지 제41조를 개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보험법은 보험법 체계를 소비자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하고,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방안으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례감액원칙 주의를 채택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감액원칙 주의를 1980년 법률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났던 소극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자 등의 주관적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전부 취소를 인정해오던 영국법률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에서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 대상을 비례감액원칙 주위에 기초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실무에 정착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해상보험의 특성 상 영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연구 진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기업보험에 해당하는 해상보험 분야에 워런티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관련업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신건훈, “영국해상법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 제28권, 제2호, 2006.
- _____, “영국 해상보험법 상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3권, 2009.
- 장덕조,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방향과 최대선의”, 보험학회지 제82집, 2009.
- 이정원,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통권 133호, 2012a.
- _____,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통권 73호), 2012b.
- 윤승국, “영국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선박보험약관 활용방안-ITCH(1983)과 IHC(2003)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3권 제4호, 2012.
- 윤승국·이재복,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관한 비교 분석”,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4권, 2012.
- 한기정, “영국법상 보험계약조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통권 150호, 2009.
- 中村信男, “イギリス2012年消費者保険(告知·表示)法の概要”, 比較法學, 47권 2호, 2013.
- Bariş Soyer, “Beginning of a new era for insurance warranties?”, Lloyd’s Maritime & Commercial Law Quarterly, LMCLQ, 2013.
- John Birds, *Birds Modern Insurance Law*, 8th ed, Sweet & Maxwell, 2010.
- MacGillivrayon, *Insurance Law*, 12th ed. Sweet & Maxwell, 2012.
-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2007).
-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319/Scot Law Com No.219). 2009.
- The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204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155. 2012.

www.legislation.gov.uk

www.lawcommission.justice.gov.uk

ABSTRACT

Some Problems Disclosure o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UK and The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 Representations), 2012

Yun, Sung Kuk

Recently with making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hereunder CIA)’, the UK revised the duty of disclosure especially with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IA, if the misrepresentation was careless, the insurer may have the three options based upon what the insurer would have done had the consumer taken care to answer the question accurately; a compensatory remedy, avoida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or, amendment of the contract.

I real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IA has been exposed to pro-actively relieve the breach of Warranty and Disclosure, Representations as far as required by the Global Insurance market. It was found that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UK Insurance Act system of the 21st century, and prepares compet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ommon law system, countries under MIA(1906) are trying to address the breach of warranty and Disclosure, Representations, except the UK cannot completely adhere with a positive attitude.

Key Words : Duty of Disclosure, Compensatory Remedy,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Representation) Act 2012, The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